

공지사항

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고시 안내

상공부고시 제91-24호

대외무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91년 5월 24일

상 공 부 장 관

<대외무역관리규정중개정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에 제14호 내지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평균손모량”이라 함은 수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원자재의 손모량(손실양 및 불량품생산에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포함한다)의 평균량을 말한다.
15. “손모율”이라 함은 평균손모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16. “단위실량”이라 함은 수출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재의 양을 말한다.
17. “기준소요량”이라 함은 고시된 수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평균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18. “단위소요량”이라 함은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산출한 수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평균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19. “소요량”이라 함은 수출품 전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20. “소요량증명서”라 함은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대응수출을 이행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계산하고 동 내용을 확인한 증명서를 말한다.
21. “소요량계산서”라 함은 소요량자체관리기업 및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이 대응수출을 이행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자체 계산한 서류를 말한다.

제2-1-2조 제3항 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한 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제2-1-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10조(개인의 무역업허가신청)영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최근 1개월간”이라 함은 무역업허가 신청일전 7일 이내로부터 소급하여 30일의 기간을 말한다.

제3-1-8조 및 제3-1-9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3-1-8조(타법령의 수출입허가 등) 대외 무역법이외의 법령 등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 등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승인, 인가 등은 법 제19조의 수출입승인을 얻기 위한 추천으로 본다.

제3-1-9조(공동명의의 수출입승인)수출입승인신청서에 수출입실적의 지분 등 상호관계를 명시하거나 기타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2인이상의 명의로 수출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5-2-15조 제1항 제1호중 “미화 2백만달러”를 “미화 1백만불”로, 동조 동항 제2호중 “5년이상”을 “계속하여 3년이상”으로 한다.

제5-2-20조 제1항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요량증명서

3. 소요량계산서(소요량자체관리기업 또는 소요량계산서발급기업의 경우)

제5-2-21조 제1항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요량증명서

3. 소요량계산서(소요량자체관리기업 또는 소요량계산서발급기업의 경우)

제5-3-1조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1조(단위소요량의 책정방법) (1) 단위소요량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책정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소득세법 제201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생산수율 및 원단위신고서”의

공지사항

생산수율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다.

제5-3-3조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에 대한 소요량증명서는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세관장이 발급한다.
- (4)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자체관리기업 및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은 소요량계산서를 소요량증명서에 갈음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5-3-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소요량증명서는 원료 등의 기준소요량 또는 단위소요량에 외화획득용 물품의 수량을 곱한 물량으로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5-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8조 (소요량자체관리기업 및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

- (1) 소요량자체관리기업 및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은 자율적으로 별지 제5-15호의 서식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2) 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를 소요량자체관리기업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전년도 국세청 생산수율비교표에 등재된 업체
 2. 전년도 수출통관액이 1천만불이상인 업체
- (3)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발급하는 소요량계산서의 소요량책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수출품이 생산수율 신고품목일 경우에는 기준소요량 고시여부에 불문하고 1년단위로 산출한 평균 실제소요량
 2. 수출품이 생산수율 미신고품목으로서 고시품목일 경우에는 기준소요량
- (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 실제소요량의 적용시기는 당해기업의 사업년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때로 한다.
-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공업진흥

청장에게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업표준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KS업체
2.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업체
3.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세계일류화상품 생산업체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2-15조에 의거 선정된 자율관리기업 및 동자율관리기업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 (6)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이 발급하는 소요량계산서의 소요량책정기준은 기준소요량으로 한다.
- (7) 공업진흥청장은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로 부터 3년이내에는 다시 지정될 수 없다.
 1. 파산 등으로 자체발급이 불가능할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1년이상 계속하여 소요량계산서 발급실적이 없는 경우
- (8) 공업진흥청장은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차체관리기업 및 소요량계산서발급기업을 지정한 때에는 상공부장관, 세관장, 외국환은행장 및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9) 공업진흥청장은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 정기보고 등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3-10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요량책정대장 정리실태(소요량계산서발급기업)

제5-4-5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 등록된 관광호텔 및 유스호텔

공지사항

제9-0-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법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영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공고 및 이 규정의 시행절차는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가 발행하는 일간무역에 게재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0-3조 및 제9-0-4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9-0-3조(관세청장의 고시)

- (1) 관세청장은 대외무역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시 등을 제정, 운용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제1항의 고시 등의 제정, 개정 시 상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0-4조(한국은행장의 고시)

- (1) 한국은행장은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입승인 및 그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고시 등을 제정하여 외국환은행이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한국은행장은 제1항의 고시 등의 제정, 개정 시 상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3-1]수출승인의 면제 제2호 사목중 “외자도입법”을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으로, 동호 자목중 “제13조 및 제23조”를 “제41조 또는 제42조”로 한다.

[별표3-1]수출승인의 면제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외국업자의 주문으로 제작되어 당해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후 반출하고자 하는 금형

[별표3-1]수출승인의 면제 제6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제공동연구를 위하여 반출하는 연구기자재로서 상공부장관이 추천한 물품

[별표3-2]수입승인의 면제 제7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국제공동연구를 위하여 반입하는 연구기자재로서 상공부장관이 추천한 물품

[별표3-3]을 별첨과 같이 한다.

[별표5-1]외화획득용의 수입추천품목 및 추천기관의 H S란중 “2903 19000”을 “2903 19 1000”으로

하고, H S 5004 00 0000건사와 H S 8409 99 3020 선박엔진용부분품 사이에 다음을 산입한다.

H S	품 목	수입추천기관
8408 10 2000	선박추진용 엔진(출력 300Kw초과 2 000Kw 이하의 것으로서 BBC건조용에 한함)	한국조선기자재 공업협동조합
90 9000	디젤엔진(선박보기용으로 BBC 건조용에 한함)	“

[별표7-1]국제입찰승인기관의 H S란중 “8516-8525”를 “8516-8529”로 한다.

[별지5-5-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5-13호 서식]중 “본적”란을 삭제한다.

[별지5-15호 서식]의 서식명 “자체소요량계산서”를 “소요량계산서”로 하고, 동서식중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을 “소요량자체관리기업 또는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제5-2-15조, 제5-2-21조, 제5-2-21조, 제5-3-3조, 제5-3-8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5-3-10조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5-3-8조 제4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의 규정은 이 고시를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고시의 고시 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자체관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이 고시에 의하여 개정되는 제5-3-8조 제5호의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에 의하여 개정되는 제5-3-8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요량자체관리기업으로 지정, 고시된 기업은 제외한다.

공지사항

[별표 3-3] 수입승인면제물품종 수입제한품목 및 수입요령

H S	품 목	수 입 요 령
8525	녹화기용 텔레비전 카메라	제3-4-2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 및 [별표3-2]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할 수 없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영제 35조 제5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관광 또는 여행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공익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업무용으로 기증받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703	외제승용차 (중고포함)	[별표3-2]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의 이차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1. 세단형의 것, 싼형의 것 또는 스테이션 왜건 2. 영 제35조 제5호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아닐 것 3. 1대에 한함.

대소련 원료 및 소비재차관 자금에 의한 수출요령

상공부고시 제91-25호

대외무역법,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북방경제교류조정에 관한 지침 및 북방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요령에 따라 “대소련 원료 및 소비재차관자금에 의한 수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1년 5월 29일
상 공 부 장 관

<대소련 원료 및 소비재차관 자금에 의한 수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외무역법,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북방경제교류 조정에 관한 지침 및 북방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요령에 의거

하여 한국수출입은행과 소련 대외경제은행간에 체결된 원료 및 소비재차관계약에 의한 수출금융을 지원받아 소련에 상품을 수출하는데 있어 교역질서를 유지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교역질서유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1조의 금융지원을 받아 소련에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출자”라 한다)는 이 요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질서있는 교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 ① 수출자는 북방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요령 제4조에 정한 대로 계약체결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공부장관에게 신고(신고서 3부 제출 : 수출자용, 상공부용, 한국수출입은행용)하고, 계약체결 즉시 동계약서 사본을 첨부(상공부용에 한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공부장관에게 신고(신고서 3부 제출 : 수출자용, 상공부용, 한국수출입은행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체결전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즉시 상공부장관에게 신고(신고서 3부 제출 : 수출자용, 상공부용, 한국수출입은행용)하여야 한다.

③ 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체결전 신고서와 계약체결후 신고서 사본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송부하되, 계약체결후 신고서 사본에는 대소련 원료 및 소비재 차관자금에 의한 수출임을 확인하여 송부한다.

제4조(신고수리) 상공부장관은 수출자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수출자와 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조 정) 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소요자금 조달사정상 필요한 경우,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계약체결전 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수출자의 선적시기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상공부장관은 수출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지사항

제6조(제재조치) ① 상공부장관은 이 요령이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교역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 대하여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대소련 원료 및 소비재차관자금 지원의 제한
3. 북방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요령 제10조에 의한 조정명령
4. 북방경제교류조정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5.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② 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 즉시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통보한다.

③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제재조치의 통보가 있는 경우 제재조치의 내용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거래의 용자승인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고사와의 관계) 이 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전의 신고는 북방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요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전력수급안정대책 협조안내

동력자원부에서는 '91전력수급 안정대책 하나로 범국가적인 전기소비절약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을 기하고자 여름철에 공장의 정기 보수를 실시할 경우 전력요금의 할인 혜택을 부여코자 한다고 하니 회원사는 참고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DTV의 용어 표준화에 관한 안내

HDTV(High Definition TV)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들이 관련기술의 개발과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차세대 텔레비전 방송기술로서 최첨단기술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확산과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HDTV가 기존 칼라TV에 비해 화질이 2배이상 "선명"하고 음향이 콤팩트 디스크에 상응할 정도로 "명료"한 기술특성을 고려하여 HDTV를 "고선명 TV"로 용어 표준화 대한 각계의 협조를 체신부가 요청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용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고선명 TV" 대신 "고화질TV" 또는 "고해상도 TV" 등과 같이 유사 표현들이 혼용되고 있는 실정므로 체신부가 재차 협조요청해온바 관련업계에서는 HDTV가 "고선명 TV"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업체 한국전자전람회 참가안내

'91년도 제22회 한국전자전람회(KES)가 (91. 10. 17~22일) 한국종합전시장(KOEX)본관 및 별관 대 전시실에서 국내 최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전시회는 국내의 바이어 및 소비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홍보효과를 획득코자, 대기업의 그룹관 전시를 지양하고 품목별, 분야별 중심으로 전시할 예정인 바, 우리 전기용품업체에서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의 우수성 및 기업의 상징적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여 판매기반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이에 본회에서는 동 전시장내 중소 전기용품업체의 특별전시관을 신설 운영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을 강구할 예정이오니 전기용품중 "KS" "품", "전", "검" 및 외국안전규격(UL, CSA, VDE 등) 획득 품목의 생산업체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업무부 전시과

문의처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8번지(전자회관 11층)

공지사항

— 직통전화 : 553-8725, 552-6340, 567-5769
— 팩시밀리 : 555-6195, 563-7339 (수신 : 전시관)

체코의 대한 산업 협력희망(전자 부품 업체 Tesla사)안내

최근 대외교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체코 최대 전자 그룹인 Tesla의 자회사이며 저항기 및 축전기 제조회사인 Tesla Jablonne nad Orlici사는 다음 품목의 생산에 관한 공동협력 및 합작투자 가능성에 대해 아국업체와 협의 코자하니 회원사의 관심있는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업체명 : Tesla Jablonne nad Orlici

- 주요 생산품목 :
 - Metal Film Resistors
 - WIRE-wound Resistors
 - Wire-wound Potentiometers
 - Carbon Slide Potentiometers
 - Electrolytic Capacitors
 - Special High Voltage Mica Capacitors
 - Silver Button Cells
 - Special purpose machines and tools for use in our own production and customized tools and equipment
- 협력형태 :
 - 생산협력(조립, 디자인, 특수기계 생산 등 유희기술 및 시설 활용가능)
 - 궁극적으로 합작투자에 관심
- 문의처 : KOTRA Tel : 551-4437

